

화성시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 06.16.]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 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 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금회모집 관련 요약사항이오니, 반드시 본 공고문 전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6.16.(화)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화성비봉 A-5블록(LH5단지)는 행복주택/영구임대 혼합단지이며, 본 공고문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추가 모집 공고하는 단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므로 한 개 단지만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완화 주요 내용 (금회 모집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① (소득 및 총자산요건 완화)

구 분	완 화 내 용
소득 요건	소득요건 배제
총자산 요건	총자산요건 배제(단, 자동차가액은 완화하지 않음)
차량요건	자동차 가액 기준액은 4,542만원 이하 (단, 대학생 계층은 가액 산출대상 차량 미소유)

* 단, 임대조건 부과유형 결정 등을 위해 소득 및 자산 조회 시행

② (기간요건 완화)

공급계층	입주자격	기 준	완 화
청년(사회초년생)	소득 업무 종사기간	5년 이내	7년 이내
	혼인기간	7년 이내	10년 이내
신혼부부	자녀의 연령	6세 이하	9세 이하
	자녀의 연령	6세 이하	9세 이하

■ 입주자격 요건

• 화성시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16.)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무주택·소득·자산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6.06.17.~2007.06.16.)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완화조건】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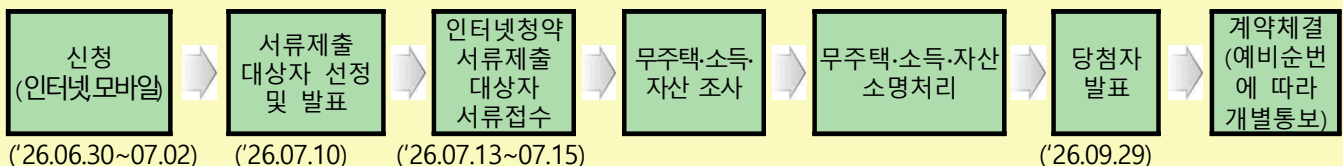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완화조건】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출생일 1961.06.16. 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예비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단, 장애인 및 정보취약계층(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제한적 현장 대행 접수 가능)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입주 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어 정상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개인요청에 의한 신청취소는 불가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 완화자격 입주자 재계약 안내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계약 시 주택, 소득·자산, 자동차 소유관련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정상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자격완화 입주자가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아래 내용에 따릅니다.

자격구분	1회차 불충족	2회차 불충족
소득·총자산 배제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미적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허용(할증 미적용)

1. 주택단지 개요

- ①화성비봉A-2블록(2단지) : 화성시 비봉면 새비봉동로 17 (구포리 874-2) 행복주택 440호
- ②화성비봉A-5블록(5단지) : 화성시 비봉면 새비봉서로 96 (삼화리 1839) 행복주택 758호
- ③화성상리 1블록(1단지) :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256-13 (상리616) 행복주택 450호
- ④화성향남2 B-15블록(15단지) :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39번길 22(상신리 1258) 행복주택 922호
- ⑤화성향남2 A20블록(20단지) : 화성시 향남읍 별말길 24 (하길리 1522) 행복주택 99호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금회 모집대상에 없는 단지별 공급형은 모집하지 않음)

단지	공급 형태	공급 대상	건설 호수	공가 호수	공급호수 (금회모집 예비자수 662)	세대 당 계약면적(㎡)				구조 및 난방 (최초입주)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차장		
비봉 A-2 블록	16	대학생, 청년	160	29	58	16.54	9.5964	2.1335	4.9132	33.1831	철근 콘크 리트 (벽식) · 지역 난방 · 복도식 (21. 10)
	27A	대학생, 청년,	46	5	10	27.34	15.8626	3.5268	8.1213	54.8507	
	27B	고령자	44	4	8	27.34	15.8626	3.5268	8.1213	54.8507	
	36A/36B	청년	100	13	26	36.28 /36.22	21.0496 /21.0148	4.6801 /4.6723	10.7769 /10.7591	72.7866 72.6662	
	44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0	11	22	44.17	25.6273	5.6978	13.1207	88.6158	
비봉 A-5 블록	29A/B	대학생, 청년	448	62	80	29.75	15.5139	2.8160	10.8176	58.8975	철근 콘크 리트 (벽식) · 지역 난방 · 복도식 (23. 10)
	29A1/B1	고령자, 청년	44	7	14	29.74	15.5087	2.8151	10.8139	58.8777	
	36A	청년,고령자	132	15	25	36.90	19.2424	3.4928	13.4174	73.0526	
	44A	청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134	23	30	44.96	23.4455	4.2558	16.3482	89.0095	

단지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건설 호수	공가 호수	공급호수 (금회모집 예비자수 662)	세대 당 계약면적(m ²)				구조 및 난방 (최초입주)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차장		
상리 1블록	14	대학생, 청년	164	25	40	14.83	7.9270	1.7774	6.8099	31.3443	철근 콘크리트 (벽식) · 중앙 난방 · 복도식 (22. 02)
	26A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56	8	16	26.32	14.0688	3.1545	12.0861	55.6294	
	26A1 (주거약자용)	대학생, 청년, 고령자	36	5	10	26.32	14.0688	3.1545	12.0861	55.6294	
	44A /44B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94	51	70	44.25 /44.22	23.6529 /23.6368	5.3036 /5.3000	20.3195 /20.3057	93.5260 /93.4625	
향남2 B-15 블록	21A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178	26	40	21.43	11.1120	2.2691	7.6837	42.4948	철근 콘크리트 (벽식) · 지역 난방 · 복도식 (23. 06)
	21A1 (주거약자용)	고령자	14	4	8	21.43	11.1120	2.2691	7.6837	42.4948	
	29A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162	22	40	29.48	15.2861	3.1215	10.5700	58.4576	
	36A /36B /36C	청년	218	27	50	36.34 /36.55 /36.59	18.8432 /18.9521 /18.9729	3.8479 /3.8701 /3.8743	13.0297 /13.1050 /13.1193	72.0608 /72.4772 /72.5565	
	36A1 (주거약자용)	고령자	24	2	4	36.34	18.8432	3.8479	13.0297	72.0608	
	44A/44B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82	30	45	44.30	22.9707	4.6907	15.8837	87.8451	
	44A1 /44B1 (주거약자용)	고령자	44	5	8	44.30	22.9707	4.6907	15.8837	87.8451	
향남2 A20 블록	16A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49	16	25	16.06	9.5186	3.8564	7.4637	36.8987	철근 콘크리트 (벽식) · 지역 난방 · 복도식 (19. 09)
	26A	청년	14	-	8	26.36	15.6233	6.3298	12.2506	60.5637	
	26B (주거약자용)	고령자	8	5	10	26.36	15.6233	6.3298	12.2506	60.5637	
	36A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28	2	15	36.15	21.4258	8.6807	16.8004	83.0569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세대 내에 안전손잡이(현관 및 욕실)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이하에 공급됩니다.** (동일 공급형이라도 주거약자용은 별도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함) 단, 화성상리 1블록 26A1(주거약자용) 형별은 일반형 및 주거약자용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을 배정 받는 경우 편의시설물의 철거 및 용도변경은 불가)
-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비봉 A-5BL 29A1/B1형은 고령자, 청년 신청가능하나, 당첨 우선순위는 고령자에게 있습니다.

2-1. 임대조건(기준 2026.06월)

○ 화성비봉 A-2블록

공급형	공급대상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 전환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16	대학생, 청년(소득無)	14,960,000	748,000	14,212,000	66,070	(+) 1,000,000	15,960,000	61,070
						(-) 12,000,000	2,960,000	101,070
	청년(소득有)	15,840,000	792,000	15,048,000	69,960	(+) 1,000,000	16,840,000	64,960
						(-) 13,000,000	2,840,000	107,870
27	대학생, 청년(소득無)	24,820,000	1,241,000	23,579,000	109,620	(+) 9,000,000	33,820,000	64,620
						(-) 20,000,000	4,820,000	167,950
	청년(소득有)	26,280,000	1,314,000	24,966,000	116,070	(+) 11,000,000	37,280,000	61,070
						(-) 21,000,000	5,280,000	177,320
	고령자	27,740,000	1,387,000	26,353,000	122,510	(+) 12,000,000	39,740,000	62,510
						(-) 23,000,000	4,740,000	189,590
36	청년(소득無)	33,660,000	1,683,000	31,977,000	148,660	(+) 17,000,000	50,660,000	63,660
						(-) 28,000,000	5,660,000	230,320
	청년(소득有)	35,640,000	1,782,000	33,858,000	157,410	(+) 18,000,000	53,640,000	67,410
						(-) 29,000,000	6,640,000	241,990
44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48,800,000	2,440,000	46,360,000	215,530	(+) 25,000,000	73,800,000	90,530
						(-) 40,000,000	8,800,000	332,190

○ 화성비봉 A-5블록

공급형	공급대상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 전환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29	대학생, 청년(소득無)	28,220,000	1,411,000	26,809,000	124,630	(+) 12,000,000	40,220,000	64,630
						(-) 23,000,000	5,220,000	191,710
	청년(소득有)	29,880,000	1,494,000	28,386,000	131,970	(+) 14,000,000	43,880,000	61,970
						(-) 24,000,000	5,880,000	201,970
	고령자	31,540,000	1,577,000	29,963,000	139,300	(+) 15,000,000	46,540,000	64,300
						(-) 26,000,000	5,540,000	215,130
36	청년(소득無)	35,360,000	1,768,000	33,592,000	156,170	(+) 18,000,000	53,360,000	66,170
						(-) 29,000,000	6,360,000	240,750
	청년(소득有)	37,440,000	1,872,000	35,568,000	165,360	(+) 19,000,000	56,440,000	70,360
						(-) 31,000,000	6,440,000	255,770
	고령자	39,520,000	1,976,000	37,544,000	174,540	(+) 20,000,000	59,520,000	74,540
						(-) 33,000,000	6,520,000	270,790
44	청년(소득無)	43,520,000	2,176,000	41,344,000	192,210	(+) 23,000,000	66,520,000	77,210
						(-) 36,000,000	7,520,000	297,210
	청년(소득有)	46,080,000	2,304,000	43,776,000	203,520	(+) 24,000,000	70,080,000	83,520
						(-) 38,000,000	8,080,000	314,35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51,200,000	2,560,000	48,640,000	226,130	(+) 27,000,000	78,200,000	91,130
						(-) 42,000,000	9,200,000	348,630
	고령자	48,640,000	2,432,000	46,208,000	214,820	(+) 25,000,000	73,640,000	89,820
						(-) 40,000,000	8,640,000	331,480

○ 화성상리 1블록

공급형	공급대상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 전환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14	대학생, 청년(소득無)	16,320,000	816,000	15,504,000	72,080	(+) 2,000,000	18,320,000	62,080
						(-) 13,000,000	3,320,000	109,990
	청년(소득有)	17,280,000	864,000	16,416,000	76,320	(+) 3,000,000	20,280,000	61,320
						(-) 14,000,000	3,280,000	117,150
26	대학생, 청년(소득無)	29,580,000	1,479,000	28,101,000	130,640	(+) 14,000,000	43,580,000	60,640
						(-) 24,000,000	5,580,000	200,640
	청년(소득有)	31,320,000	1,566,000	29,754,000	138,330	(+) 15,000,000	46,320,000	63,330
						(-) 26,000,000	5,320,000	214,160
	주거급여수급자	26,100,000	1,305,000	24,795,000	115,270	(+) 11,000,000	37,100,000	60,270
						(-) 21,000,000	5,100,000	176,520
	고령자	33,060,000	1,653,000	31,407,000	146,010	(+) 17,000,000	50,060,000	61,010
						(-) 27,000,000	6,060,000	224,760
44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0,000,000	3,000,000	57,000,000	265,000	(+) 31,000,000	91,000,000	110,000
						(-) 50,000,000	10,000,000	410,830

○ 화성향남2 B-15블록

공급형	공급대상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 전환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21	대학생, 청년(소득無)	19,380,000	969,000	18,411,000	92,050	(+) 6,000,000	25,380,000	62,050
						(-) 16,000,000	3,380,000	138,710
	청년(소득有)	20,520,000	1,026,000	19,494,000	97,470	(+) 7,000,000	27,520,000	62,470
						(-) 16,000,000	4,520,000	144,130
	주거급여수급자	17,100,000	855,000	16,245,000	81,220	(+) 4,000,000	21,100,000	61,220
						(-) 14,000,000	3,100,000	122,050
	고령자	21,660,000	1,083,000	20,577,000	102,880	(+) 8,000,000	29,660,000	62,880
						(-) 17,000,000	4,660,000	152,460
29	청년(소득無)	26,180,000	1,309,000	24,871,000	124,350	(+) 12,000,000	38,180,000	64,350
						(-) 21,000,000	5,180,000	185,600
	청년(소득有)	27,720,000	1,386,000	26,334,000	131,670	(+) 14,000,000	41,720,000	61,670
						(-) 22,000,000	5,720,000	195,830
	주거급여수급자	23,100,000	1,155,000	21,945,000	109,720	(+) 9,000,000	32,100,000	64,720
						(-) 19,000,000	4,100,000	165,130
36	청년(소득無)	32,980,000	1,649,000	31,331,000	156,650	(+) 18,000,000	50,980,000	66,650
						(-) 27,000,000	5,980,000	235,400
	청년(소득有)	34,920,000	1,746,000	33,174,000	165,870	(+) 19,000,000	53,920,000	70,870
						(-) 28,000,000	6,920,000	247,530
	고령자	36,860,000	1,843,000	35,017,000	175,080	(+) 21,000,000	57,860,000	70,080
						(-) 30,000,000	6,860,000	262,580
44	청년(소득無)	40,460,000	2,023,000	38,437,000	192,180	(+) 23,000,000	63,460,000	77,180
						(-) 33,000,000	7,460,000	288,430
	청년(소득有)	42,840,000	2,142,000	40,698,000	203,490	(+) 24,000,000	66,840,000	83,490
						(-) 35,000,000	7,840,000	305,570
	고령자	45,220,000	2,261,000	42,959,000	214,790	(+) 25,000,000	70,220,000	89,790
						(-) 37,000,000	8,220,000	322,70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47,600,000	2,380,000	45,220,000	226,100	(+) 27,000,000	74,600,000	91,100
						(-) 39,000,000	8,600,000	339,850

○ 화성향남2 A20블록

공급형	공급대상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 전환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16	대학생, 청년(소득無)	14,280,000	714,000	13,566,000	67,830	(+) 1,000,000	15,280,000	62,830
						(-) 11,000,000	3,280,000	99,910
	청년(소득有)	15,120,000	756,000	14,364,000	71,820	(+) 2,000,000	17,120,000	61,820
						(-) 12,000,000	3,120,000	106,820
	주거급여수급자	12,600,000	630,000	11,970,000	59,850	(+) -	12,600,000	-
						(-) 10,000,000	2,600,000	89,010
26	청년(소득無)	23,120,000	1,156,000	21,964,000	109,820	(+) 9,000,000	32,120,000	64,820
						(-) 19,000,000	4,120,000	165,230
	청년(소득有)	24,480,000	1,224,000	23,256,000	116,280	(+) 11,000,000	35,480,000	61,280
						(-) 20,000,000	4,480,000	174,610
	고령자	25,840,000	1,292,000	24,548,000	122,740	(+) 12,000,000	37,840,000	62,740
						(-) 21,000,000	4,840,000	183,990
36	청년(소득無)	31,960,000	1,598,000	30,362,000	151,810	(+) 18,000,000	49,960,000	61,810
						(-) 26,000,000	5,960,000	227,640
	청년(소득有)	33,840,000	1,692,000	32,148,000	160,740	(+) 19,000,000	52,840,000	65,740
						(-) 28,000,000	5,840,000	242,40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7,600,000	1,880,000	35,720,000	178,600	(+) 21,000,000	58,600,000	73,600
						(-) 31,000,000	6,600,000	269,010
	고령자	35,720,000	1,786,000	33,934,000	169,670	(+) 20,000,000	55,720,000	69,670
						(-) 29,000,000	6,720,000	254,250

- 금회 모집단지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6.16.이며,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는 기입주자의 해약등으로 인한 공가 및 공가가 예상되는 주택형을 대상으로 예비자를 모집하며, 본 공고를 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 발생 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및 입주하게 되므로 예비자 순위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 적용)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본 공고는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모집하는 공고로 본인이 해당하는 계층에서 [완화조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단, 최초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아래 기본자격([일반조건])을 충족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자격완화 입주자가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아래 내용에 따르며, 갱신계약 세부 적용 기준과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유의사항] 참고)

자격구분	1회차 불충족	2회차 불충족
소득·총자산 배제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미적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허용(할증 미적용)

3-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16.)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㉓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㉓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 ①-㉓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㉓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완화조건] 소득요건 배제
- ④ [완화조건] 자산요건 배제(단, 신청자 본인이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 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상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순위

1순위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거주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등본 상 공고일 현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16.)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㉓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㉓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 ①-㉓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6.06.17 ~ 2007.06.16)
- ①-㉓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완화조건] 7년 이내 인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공고일기준 예술활동증명서 상 유효기간 내이어야 함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완화조건] 소득요건 배제
- ④ [완화조건] 자산요건 배제하되, 해당 세대의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을 적용

-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청약신청 시 '소득 없음[무(無)]'으로 신청하였으나,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조회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해당되는 청년계층 임대조건(소득 有 또는 소득 無)을 적용함
-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④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④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구분	해당세대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1순위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㉓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㉒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㉑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①-㉓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 ①-㉒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①-㉑ (한부모가족)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 ② 혼인기간이 【완화조건】 10년 이내일 것 또는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 ③ 【완화조건】 소득요건 배제

- ④ **[완화조건] 자산요건 배제**하되, 해당 세대의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4.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출생일 1961.06.16.이전)

- ① **【완화조건】 소득요건 배제**
- ② **【완화조건】 자산요건 배제**하되, 해당 세대의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 '고령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3-5.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신청접수 (인터넷 PC/모바일)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p>'26.06.30(화) 10:00 ~ '26.07.02(목) 17:00</p> <p>※ 24시간 신청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수정 및 삭제는 신청 당일만 가능</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현장대행접수)</p> <p>'26.07.01(수) 10:00 ~26.07.02(목) 16:00</p> <p>당일 10:00~16:00 (점심시간 12~13시제외)</p> <p>※ 장애인 및 65세이상 고령자에 한함</p> </div>	<p>'26.07.10(금) 14:00 이후 (확인방법)</p> <p>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클릭</p>	<p>'26.07.13(월) ~ 07.15(수)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p> <p>(등기우편 발송주소) 경기 화성시 병점노을6로 30, 병점메트로타워 6층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우: 18371) (봉투 겉면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 7.15(수) 일자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함 * 신청접수번호를 필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p>	<p>'26.09.29(화) 14:00 이후 (확인방법)</p> <p>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상단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클릭</p> <p>또는 ARS(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 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플러스 별도게시</p>	<p>당첨자 발표 시 예비자 순번 부여 후</p> <p>공가 발생시 추후 개별 통보</p>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등 정보취약계층의 현장 대행 접수**는 제한적으로 가능하오니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간 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공고문 5. 신청서류 참고, 서류 미지참시 접수 불가)**)
- 인터넷 청약신청 내용 변경(수정 또는 삭제)은 신청 당일만 가능합니다. (단, 7.02(목)은 17시 전까지)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공고문 (5. 신청서류)를 참고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26.07.15(수)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함) 단, **현장대행접수자(장애인 및 65세이상 고령자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같음하며 미비 서류가 있는 경우는 추가 제출합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됩니다. 누락, 착오신청, 허위신청으로 인하여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른 경우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순위 및 신청자의 해당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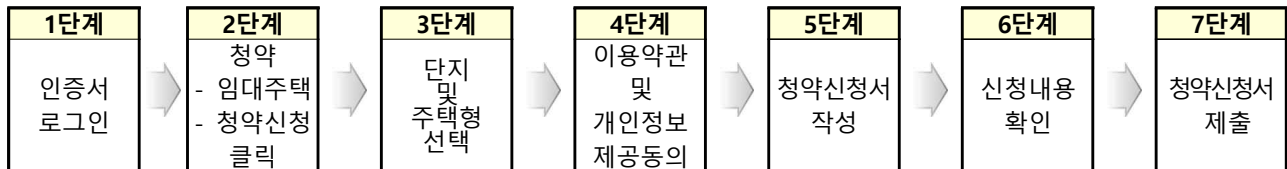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청약플러스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인증서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③ 인터넷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청약플러스의 「청약 연습하기」로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오후 5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에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4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공고문 (5. 신청서류)를 참고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26.07.15.(수)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함)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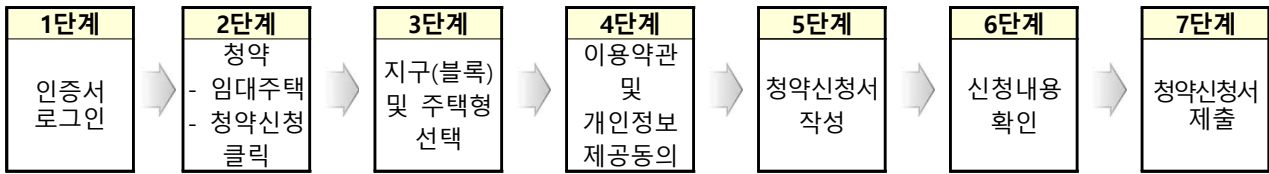
①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 → 고객센터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를 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청 시,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방문 신청방법(장애인 및 고령자에 한함) ※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신청인 관련 **아래 서류와 [5.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현장에서 어떤 단지, 어떤 유형을 신청하면 좋을지 등의 **상담은 불가**하므로 미리 신청하실 단지와 형별을 정해서 오셔야 하며, 신청자격 요건 등도 반드시 숙지하여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현장접수 대상자 증빙서류	- 65세 이상 고령자(1961.06.10 이전 출생자) : 본인 신분증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본인 직접 신청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 대리 신청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 신청	①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위임장(반드시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으로 날인)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발급용도:행복주택 대리신청) /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상의 자필서명) * 위임장의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기재
------------------	--

■ **현장방문 신청 장소**

신청 장소		<p>■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6로 30, 병점메트로타워 6층 (병점동 886-5번지)</p> <p>■ 오시는 길 - 지하철 : 병점역 1호선 2.3번 출구 맞은편, (육교에서 약 100m 도보 이동)</p> <p>■ 주 차 건물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길 건너편 야외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p>
--------------	--	--

■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6.07.10(금) 14:00**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P C : LH청약플러스 → 『청약』 클릭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기한 내[26.07.13(월)~07.15(수)]에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 **(우 18371)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6로 30, 병점메트로타워 6층 LH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필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06.16.)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O), 123456-1***** (X)

※ **서류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미비서류에 대해서는 추후 통보)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부 (공사양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제출대상) 전체	각 1부 (공사양식)
입주자격완화 약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부
주민등록표초본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단,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 우선공급신청 시 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초본 각 1통 (단, 부모 사망시 제출 불요) 	1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 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1부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부
입양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양자녀가 있어 인정 받으려는 경우 	1부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구비서류	발급처
대학생계층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학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대학 공사양식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청년계층	청년 (19세 이상~39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노동청국 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완화조건】 총 7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해당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연구기관,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복무 확인서(복무 중인 경우) 또는 병적증명서(복무완료인 경우)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시 청약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신혼부부계층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예비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미혼인 경우에도 발급가능) ※ 혼인 후 혼인관계증명서 재 제출(입주시점에 미제출 시 당첨 및 계약 무효 처리됨) ※ 입주 시 혼인 후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 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추가 제출 (입주시점에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p>공사양식 공사양식</p> <p>행정복지센터</p>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미제출 시 입주불가) 	<p>국민연금공단 등</p> <p>해당직장</p> <p>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p>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없음 	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 2026.09.29(화) 14:00 이후

- 해당 공고는 예비자모집으로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해당 공고의 당첨된 예비자 순위를 확인할 수 있음
- 단지에 따라 기대대기중인 예비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예비순번이 결정되므로 실 대기 순위는 발표된 예비자 순위보다 뒤로 밀릴 수도 있음

■ 예비자 계약안내 : 추후 개별통보

- 금회 모집 공고의 경우 모두 예비입주자 모집이므로 추후 공가 및 공가 발생 시 예비자 대기 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추후 계약일이 확정되는 시점에 개별 등기우편으로 안내 예정입니다.

- 동호배정은 신청형별에 따라 동·층·향별 구분 없이 전산추첨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AR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로그인 → 고객센터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ARS 1661-7700 → 3번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관리부내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트,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증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재산 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직권조사 등록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입주자격 완화	<p>■ 입주 자격 완화 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304 342 1485 913"> <thead> <tr> <th data-bbox="304 342 517 398">항목</th> <th data-bbox="517 342 1485 398">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04 398 517 465">소득요건</td> <td data-bbox="517 398 1485 465">소득요건 배제</td> </tr> <tr> <td data-bbox="304 465 517 645">자산요건</td> <td data-bbox="517 465 1485 645"> 자산요건 배제 ※ 단,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기준은 완화대상이 아니며,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일 것을 충족하여야 하고 대학생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td> </tr> <tr> <td data-bbox="304 645 517 913" rowspan="3">기간요건 완화</td> <td data-bbox="517 645 1485 734">청년(사회초년생) 계층으로 신청 시 총 소득총사기간 기본 : 총 5년 이내 → 완화 : 총 7년 이내</td> </tr> <tr> <td data-bbox="517 734 1485 824">신혼부부 계층으로 신청 시 혼인기간 기본 : 7년 이내 → 완화 : 10년 이내거나 자녀연령 9세 이하</td> </tr> <tr> <td data-bbox="517 824 1485 913">한부모가족 계층으로 신청 시 자녀의 연령 기본 : 만 6세 이하 → 완화 : 만 9세 이하</td> </tr> </tbody> </table>	항목	내용	소득요건	소득요건 배제	자산요건	자산요건 배제 ※ 단,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기준은 완화대상이 아니며,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일 것을 충족하여야 하고 대학생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기간요건 완화	청년(사회초년생) 계층으로 신청 시 총 소득총사기간 기본 : 총 5년 이내 → 완화 : 총 7년 이내	신혼부부 계층으로 신청 시 혼인기간 기본 : 7년 이내 → 완화 : 10년 이내거나 자녀연령 9세 이하	한부모가족 계층으로 신청 시 자녀의 연령 기본 : 만 6세 이하 → 완화 : 만 9세 이하
	항목	내용									
	소득요건	소득요건 배제									
	자산요건	자산요건 배제 ※ 단,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기준은 완화대상이 아니며,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일 것을 충족하여야 하고 대학생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기간요건 완화	청년(사회초년생) 계층으로 신청 시 총 소득총사기간 기본 : 총 5년 이내 → 완화 : 총 7년 이내										
	신혼부부 계층으로 신청 시 혼인기간 기본 : 7년 이내 → 완화 : 10년 이내거나 자녀연령 9세 이하										
	한부모가족 계층으로 신청 시 자녀의 연령 기본 : 만 6세 이하 → 완화 : 만 9세 이하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p>■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data-bbox="284 1220 1469 1379"> <thead> <tr> <th data-bbox="284 1220 651 1261">입주자격</th> <th data-bbox="651 1220 1469 1261">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84 1261 651 1301">대학생, 청년 계층</td> <td data-bbox="651 1261 1469 1301">10년</td> </tr> <tr> <td data-bbox="284 1301 651 1341">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 <td data-bbox="651 1301 1469 1341">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td> </tr> <tr> <td data-bbox="284 1341 651 1379">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 <td data-bbox="651 1341 1469 1379">20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p>■ 재청약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p>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p>
예비입주자	<p>■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등	<p>■ 갱신계약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금회 입주자격 완화 모집공고 입주자의 경우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총자산요건 완화 입주자) 금번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청년계층의 경우 19세 이상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10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9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p>■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p>자동차 등록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 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 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6년의 경우 4,542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차량등록은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의 차량으로 1세대 1차량 이하 등록 원칙을 유지하며, 대학생 계층은 차량등록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별 주차대수 현황 <table border="1" data-bbox="331 965 1182 1211"> <thead> <tr> <th>단지</th> <th>총 세대수</th> <th>주차대수</th> </tr> </thead> <tbody> <tr> <td>화성비봉 A-2블록</td> <td>440세대</td> <td>310대</td> </tr> <tr> <td>화성비봉 A-5블록</td> <td>894세대</td> <td>593대</td> </tr> <tr> <td>화성상리 1블록</td> <td>450세대</td> <td>297대</td> </tr> <tr> <td>화성향남2 B-15블록</td> <td>922세대</td> <td>558대</td> </tr> <tr> <td>화성향남2 A20블록</td> <td>99세대</td> <td>89대</td> </tr> </tbody> </table>	단지	총 세대수	주차대수	화성비봉 A-2블록	440세대	310대	화성비봉 A-5블록	894세대	593대	화성상리 1블록	450세대	297대	화성향남2 B-15블록	922세대	558대	화성향남2 A20블록	99세대	89대
단지	총 세대수	주차대수																	
화성비봉 A-2블록	440세대	310대																	
화성비봉 A-5블록	894세대	593대																	
화성상리 1블록	450세대	297대																	
화성향남2 B-15블록	922세대	558대																	
화성향남2 A20블록	99세대	89대																	
<p>단지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단지특성 자세한 사항은 최초모집공고문 참조)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 설치 현황 * 화성비봉 A-2블록 : 16형의 주택에는 소형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 책장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 16형은 세대 내 세탁기 설치 공간이 없으며, 공동세탁실(세탁기,건조기)을 이용할 수 있음 * 화성상리 1블록 : 14형 주택에는 책상, 냉장고장, 소형 냉장고, 전기쿡탑(2구) 등 빌트인 가전.가구가 설치, 26A형 주택에는 전기쿡탑(2구), 44A/B형 주택에는 전기쿡탑(3구)이 빌트인으로 설치 * 화성향남2 B-15블록 : 21형의 주택에는 소형 냉장고, 냉장고장, 가스쿡탑(2구형), 책상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 * 화성향남2 A20블록 : 16형의 주택에는 소형 냉장고, 가스쿡탑(2구형), 책상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 																		
<p>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단,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주거약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 여건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별도 문의)
 - 조립식 욕실 설치된 단지는 욕실내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주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계약 전 한번 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단,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주방	높낮이조정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거실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기타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편의시설 유의사항(추가모집/재임대)

- ▶ 기 입주 단지이므로 일부 설치 항목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단지별로 설치 항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 계약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계약 전 한번 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당첨자 ARS	1661-7700
인 터 넷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 수 처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6로 30, 병점메트로타워 6층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6. 1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